

민원 답변

☐ 민원인 : (민원-4961호)

☐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신 민원은 '① 가석방 요건 및 가석방 대상 여부 ② 가석방 규정'에 대한 문의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①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정기관에서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를 신청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이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가석방 예비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정기관의 가석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② 아울러 가석방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 자료 공개 요청은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 관련 법령】

- 「형법」 제72조 ~ 제76조
- 「형집행법」 제119조 ~ 제122조
- 「형집행법 시행령」 제140조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6조 ~ 제263조
- 「가석방 업무지침」
- 「가석방자 관리규정」
-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분류심사과(02.2110.41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답변

□ 민원인 : (민원-1602호)

□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신 민원은 ‘추징금이 있는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뇌우치는 빛이 뚜렷한 모범수형자 중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이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각 교정기관 가석방 예비회의를 통해 가석방 적격 심사 대상자를 선정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에 의하여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가석방 예비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정기관의 가석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분류심사과(02.2110.41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